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72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김문수 · 박지원 · 김 윤
박홍배 · 이광희 · 박용갑
이수진 · 이주희 · 김남근
민병덕 · 최민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채용시장에서 임금이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를 후 결정” 등으로 표시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직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정보인 임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채용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 불일치가 발생하여 조기 이직, 재취업 준비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채용광고의 기재사항) ①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제1항에 따라 채용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구인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광고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광고를 게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